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78
----------	-----

2018. 4. 5.(목)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8년 3월 14일

다. 회부일자 : 2018년 3월 15일

라. 상정일자 : 2018년 3월 23일

－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오진섭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개정으로 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법률 제15291호, 2017.12.26., 일부개정, 2018.1.1.시행),
-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업무처리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 도민의 권리구제 담당부서에 배치(안 제3조)
-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5급 또는 4급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조세·회계·법률 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안건 심의, 고충민원 처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안 제18조)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권리보호 요청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9조~안 제27조)
-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준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8조~안 제31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호식)

- 금번 제정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세금을 억울하게 부과 받았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두도록 함에 따라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전담·수행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및 자격기준, 처리사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도민들에게 지방세 납세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 778 호
의 결 연 월 일	2018년 월 일 (제363회)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8년 3월 14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안 번호	778
----------	-----

제출연월일 : 2018년 3월 1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개정으로 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법률 제15291호, 2017.12.26., 일부개정, 2018.1.1.시행),
-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업무처리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 도민의 권리구제 담당부서에 배치(안 제3조)
-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5급 또는 4급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조세·회계·법률 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안건 심의, 고충민원 처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안 제18조)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권리보호 요청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9조~안 제27조)
- 납세자권리현장 제정·준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8조~안 제31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 도민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5급 또는 4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을 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납세보호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 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고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아니한 사람
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사람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장 또는 도세(부과·징수가 위임된 도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 내에서 시·군의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제6조(지도·감독) 납세자보호관은 도세 관련 납세자보호 업무에 관하여 시·군 납세자보호관을 지도·감독한다.

제3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제7조(안건 심의 등)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법·영에 따른다.

제4장 고충민원

제9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제11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감사결과 및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민원의 분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 도지사가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2. 내용이 유사한 도세 관련 고충민원이 2개 이상 시·군에 접수되어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도세 관련 시·군 고충민원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와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6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7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5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19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 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0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1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21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2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1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6장 권리보호 요청

제23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은 법·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4조(고충민원과 구분) ① 권리보호요청은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고충민원과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제25조(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6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27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제7장 납세자권리헌장

제28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 도지사는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9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30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취

□ 지방세기본법

제76조(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지사유가 소멸되기 전이라도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그 기간을 미리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 명령을 위반한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제121조(통고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증(確證)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또는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 추징금, 서류의 송달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보관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납부신청을 하고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범칙사건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 ④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관련 자료를 분석·가공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통계자료 및 추계자료 등 지방세 운용 관련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방세 운용 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계자료의 내용과 공개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현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9.]

□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55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①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는 지방세 부과·징수·채납 및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결산의 승인 후 2개월 이내(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공보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제1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에 포함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 통계자료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법률 제15291호, 2017.12.26., 일부개정, 2018.1.1.시행),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업무처리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납세자보호관 배치 부서 규정(안 제4조)
 - ◆ 세무부서 외 도민의 권리구제 담당부서에 배치
-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 내부임용 : 5급 또는 4급,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자
 - ◆ 민간임용 : 세무사 등 조세·법률·회계 분야 전문가

2. 비용 발생 요인

- 납세자보호관 선발, 배치에 따라 인건비 지급비용 발생

3. 관련조문

-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 도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 5급 또는 4급

2. 경력기준 :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 재정수반요인

- 납세자보호관 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급 소요 예상

○ 비용추계의 전제

- 본 비용추계의 분석기간은 2018~2022년으로 5년간이며, 납세자보호관 선발 예상 직급인 5급(1명) 및 '18년도 세출예산서의 연봉제 5급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함

○ 비용추계 결과 : 향후 5년간 275,794천원 인건비 증가 추계됨

구 분	1차년도 (‘18년)	2차년도 (‘19년)	3차년도 (‘20년)	4차년도 (‘21년)	5차년도 (‘22년)	계
세 출 (인건비)	-	68,946	68,946	68,946	68,946	275,794

○ 재원조달방안 :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로 충당('19년 반영 예정*)

*행정안전부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운영 추진지침 통보('18.1.1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